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 월 7 일

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박현국 인

여수시 조례 제1735호

붙임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735호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조례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를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 하여야”로 한다.

② 국내외 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여수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④ 시장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제3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내외 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여수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 ---------- ---------- ---------- -. ---------- ----------.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1. ---------- --------- 5년 ----------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내외 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여수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 하여야 ----------.